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제품 승인 등 제도 이행 안내

## □ 배경 및 목적

- 가습기살균제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살생물물질·제품은 시장 출시 전(前) 안전한 경우(승인) 유통 가능하며, 살균제 등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으로 한시적 관리(화학제품안전법, '19.1 시행)
- 신고·승인된 안생품도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면 승인유예기간 내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아야 함(참고 1, 2, 3)
  - ※ '18년 3월 이후 30여 차례 이상 설명회, 간담회, 공문 등으로 승인제도에 대해 안내해 왔으며, 승인유예기간 종료 시 안생품 중 살생물제품 품목은 삭제될 예정('24년)

## □ 안내 및 향후 조치 사항(참고 4, 5, 6, 7)

- (살생물제품 승인) 안생품 중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품목(10개)은 승인유예기간 내 살생물제품 승인 완료 필요
  - \* ①살균제 ②살조제 ③가습기용 항균·소독제 ④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⑤기피제 ⑥보건용 살충제 ⑦보건용 기피제 ⑧감염병예방용 살충제 ⑨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⑩목재용 보존제
-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참고 7) 함유) '24년까지 살생물제품 승인 완료
  - \* '22년 승인유예대상 물질 중 현재 총 64종에 대해 검토·평가 중이며, 12월까지 승인 여부 통보 예정임. 승인이 완료되면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업체는 승인받은 물질과 제조·수입사 뿐 아니라 승인통지서상의 제조시설 소재지(국내외 제조사)도 동일한 살생물물질을 사용하여야 함
- (미승인 살생물물질(참고 7) 함유) '23년 1월까지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에 대한 승인을 동시에 신청하여 '23년까지 승인 완료
- 살생물제품에 함유된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사의 물질승인 진행 사항 확인 후 승인된 물질로의 대체\* 등 사전조치 필요(참고 7)
  - \*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승인받은 살생물물질로 대체하여 '24년까지 살생물제품 승인 완료
- 안생품 신고·승인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위 기한(목재용 보존제는 +2년) 내 살생물제품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미승인 시 위 기한 이후 제조·수입·판매·유통 금지(법 부칙 제3조, 참고 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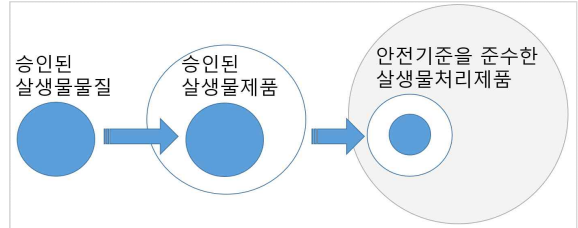
## 참고 1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개념 및 관리제도 개요

□ 살생물제는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살생물처리제품을 포괄

○ (살생물물질) 유해생물을 제거하거나 무해화(無害化), 억제하는 물질

\* PHMG, 에탄올, 라벤더오일 등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 살생물물질을 함유하거나 생성하는 제품

\* 가습기살균제, 방역용 소독제, 살충제, 목재용 보존제 등

○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보존 등의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

\* 보존제 함유 제품(세정제, 산업용 세정액 등), 피혁제품(의류 집화, 소파 등), 곰팡이 방지 처리된 주방·욕실 용품, 보존 처리된 목재·가구·건축자재, 향균 사무용품 전자제품 등

□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국내 유통 가능

○ (물질) 제도 시행('19.1.1.) 이전 국내 유통된 기존살생물물질은 신고 후 승인유예기간 내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제품) 기존물질만 함유한 살생물제품과 살생물처리제품은 물질 유예기간에 각 2년, 4년을 더하여 승인 또는 안전기준 유예 적용

- 다만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승인과 안전기준 유예기간이 단축될 수 있음

### < 기존살생물물질 승인 유예기간 >

유예기간	~ '22년(3년)	~ '24년(5년)	~ '27년(8년)	~ '29년(10년)
살생물제품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살균제/ ◦ 살조제</li> <li>◦ 살서제/ ◦ 살충제</li> <li>◦ 기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재용 보존제</li> <li>◦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li> <li>◦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보존용 보존제</li> <li>◦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li> <li>◦ 섬유·가죽류용 보존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자재용 보존제</li> <li>◦ 재료·장비용 보존제</li> <li>◦ 사체·박제용 보존제</li> <li>◦ 선박·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li> </ul>

## 참고 2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살생물제 승인 관련 규정

- (법 제3조, 제20조 등)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유통하기 위해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승인을 받아야 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20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생략

6. “살생물제”(殺生物劑)란 살생물물질,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을 말한다.
7. “살생물물질”이란 유해생물을 제거, 무해화(無害化) 또는 억제(이하 “제거등”이라 한다)하는 기능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 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을 말한다.
8. “살생물제품”이란 유해생물의 제거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 가. 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이 혼합된 제품
  - 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천연물질 또는 미생물의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9. “살생물처리제품”이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제20조(살생물제품의 승인) ① 살생물제품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이하 “제품승인”이라 한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살생물제품 또는 그 잔류물이 사람·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살생물물질일 것
  - 가. 물질승인등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 나.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된 살생물물질
  - 다. 제18조제3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범위에서 사용되는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제1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유형이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의 유형과 다른 경우에 한정한다)
3. 살생물제품의 유해생물 제거등의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4. 살생물제품이 제거등의 목적이 되는 유해생물에게 내성이 생기게 하지 아니할 것
5. 살생물제품이 척추동물의 제거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살생물제품의 취급 또는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용기 또는 포장을 사용할 것

- (법 제28조) 살생물처리제품은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제품 보존 등 부수적 목적을 위해 살생물제품을 사용한 제품으로, 승인받은 살생물제품을 사용하고,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함

- (법 부칙 제3조) 살생물제품의 승인유예기간\*은 함유된 살생물물질의 기존 살생물물질 고시, 지정해제 및 제조·수입 금지 여부에 따라 차등화

- ※ ①살생물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이 고시된 기존살생물물질 : 물질 + 2년
- ②함유된 물질 중 1개 이상이 제조·수입 금지(법 제19조)되거나, 기존살생물물질 지정 해제 시 : 둘 중 먼저 발생한 날 + 1년
- ③ ①,②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0.12.31.까지

### 참고 3

### 안생품 품목 중 살생물제품 및 살생물처리제품 구분

- 안생품 총 39개 품목 중 살균제·구제제 등 10개 품목은 살생물제품, 필터형 보존처리제품과 그 외(보존제를 사용한 제품 중 살생물 기능을 주장하지 않거나, 부수적 목적에 한해 주장)는 살생물처리제품(이하 '처리제품')에 해당
- 처리제품 품목(29개 품목)임에도 표시·광고 내용에 따라 주장하는 살생물 기능이 살균, 살충 등과 같이 제품의 주된 목적\*에 해당 (10개 품목)하는 경우, 살생물제품\*\*으로 구분됨(법 제3조)
  -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공지사항 「살생물처리제품 제도이행 가이드라인」 참조
  - \*\* 처리제품 품목임에도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주장(표시·광고 등) 시, 현행 규정에 따라 미승인·미신고된 안생품, 유효기간 이후에는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분 가능

분류	품목	신고/승인	살생물 제품/처리제품
세정제품	1. 세정제, 2. 제거제	신고	
세탁제품	1. 세탁세제, 2. 표백제, 3. 섬유유연제	신고	
코팅제품	1. 광택 코팅제, 2. 특수목적코팅제 3. 녹 방지제, 4. 윤활제, 5. 다림질보조제	신고	
접착·접합제품	1. 접착제, 2. 접합제	신고	
방향·탈취제품	1. 방향제, 2. 탈취제	신고	
염색·도색제품	1. 물체 염색제, 2. 물체 도색제	신고	
자동차 전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신고	
인쇄·문서 관련 제품	1. 인쇄용 잉크·토너, 2. 인주, 3.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신고	
미용제품	1. 미용 접착제, 2. 문신용 염료	신고	
살균제품	1. 살균제, 2. 살조제,	신고	
	3. 가습기용 항균·소독제, 4. 감염병예방용 방역 살균·소독제	승인	
구제제품	1. 기피제,	신고	
	2. 보건용 살충제, 3. 보건용 기피제 4. 감염병예방용 살충제, 5. 감염병예방용 살서제	승인	
보존·보존처리 제품	1. 목재용 보존제	신고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신고	
기타	1. 초, 2. 습기제거제, 3. 인공 눈 스프레이, 4. 공연용 포그액	신고	
	1.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승인	

## 참고 4

## 안생품 중 살생물제품 승인 대상, 승인유예기간 및 처분

### □ 안생품 중 살생물제품 승인 대상, 승인유예기간 및 처분

- (승인 대상) 안생품으로 신고·승인된 제품이라도,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품목\*의 제조·수입자는 승인유예기간 내에 제품승인을 완료해야함

\* 살균제·구제제 등 10개 품목 + 살생물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주장하는 제품

- (처분) 승인유예기간 내 제품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살생물제품은 제조·수입·판매·유통 금지, 회수·폐기 조치 대상, 과징금, 벌칙 등

\*\* 처리제품 품목임에도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는 주장(표시·광고 등) 시, 현행 규정에 따라 미승인·미신고된 안생품, 유예기간 이후에는 미승인 살생물제품으로 처분 가능

구분	기존살생물물질 승인유예기간 내 승인 여부 등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조치 필요 사항
살균제, 구제제	기존살생물 물질 지정·고시	'22년 내 물질 승인	· ~'24년 12월 31일	· '23년 9월까지 승인신청 권고
		'22년 내 물질 미승인	· ~'23년 12월 31일	· 해당 제품을 '23년 이후에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23년 1월까지 완결성 갖춘 자료를 구비해 물질·제품의 동시 승인신청 권고
		지정해제, 제조·수입 금지	· 지정해제일 또는 제조·수입 금지일 중 먼저 발생한 날 + 1년	· 살생물제품 내 사용하는 살생물 물질을 승인된 물질로 대체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
	기존살생물물질이 아니거나, 미고시 물질	· ~'20년 12월 31일		
보존제	기존살생물 물질 지정·고시	'24년 내 물질 승인	· ~'26년 12월 31일	· '25년 9월까지 승인신청 권고
		'24년 내 물질 미승인	· ~'25년 12월 31일	· 물질 제조·수입사와 사전에 협의해서 필수 물질은 승인받을 수 있도록 자료 준비 필요
		지정해제, 제조·수입 금지	· 지정해제일 또는 제조·수입 금지일 중 먼저 발생한 날 + 1년	· 살생물제품 내 사용하는 살생물 물질을 승인물질로 대체 또는 다른 용도로 전환
	기존살생물물질이 아니거나, 미고시 물질	· ~'20년 12월 31일		

## 참고 5

##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생품 및 살생물제품 안전관리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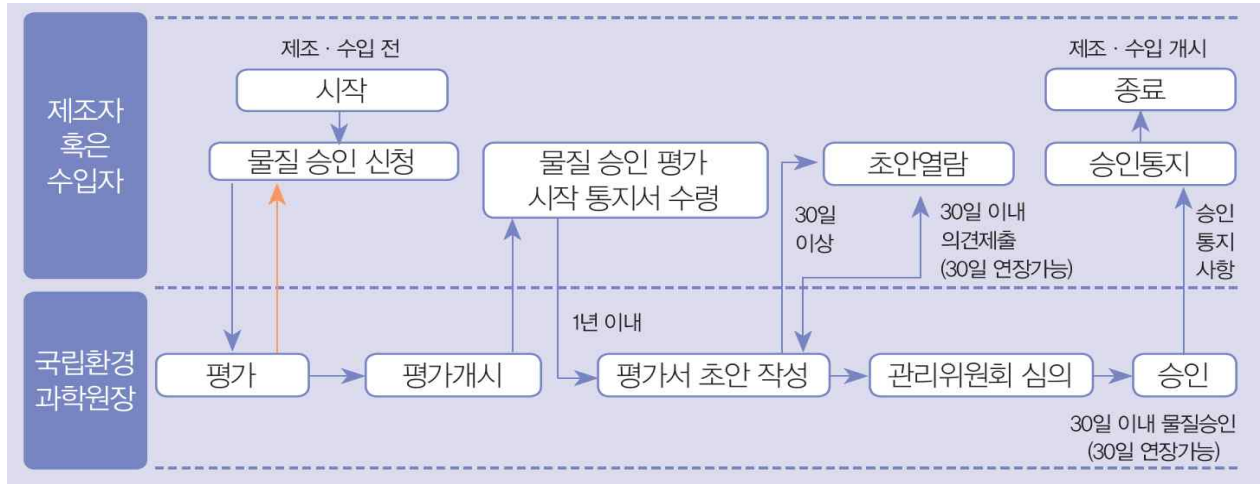
구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살생물제품 승인
	신고	승인	
신고·승인 관련 법조문	법 제10조 (제6항, 제7항 제외)	법 제10조 제6항 및 제7항	법 제 20조, 제27조, 제36조의 2, 법 부칙 제3조 등
법령상 의무	안전확인 및 신고, 표시기준 준수	승인, 표시기준 준수, 품질관리 의무	승인, 표시기준 준수, 품질관리 의무
갱신 제도	3년마다 안전확인	-	승인시 부여된 승인유효 기간 종료 시 갱신 (유위해성에 따라 10년, 7년, 5년의 승인유효기간 부여)
품목	총 4개 품목  살균제품(살균제, 살조제) 구제제품(기피제) 보존제품(목재용 보존제)	총 6개 품목  살균제품(가습기용 항균소 독제, 감염병예방용 방 역 살균소독제) 구제제품(보건용 살충제, 보건용 기피제,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감염병예 방용 살서제)	15개 제품 유형  살균제류(2개 품목) 구제제류(5개 품목) 보존제류(7개 품목) 기타(1개 품목)
기간에 따른 관리 대상	살생물제품 승인유효기간 내	살생물제품 승인유효기간 내	살생물제품 승인유효기간 이후
신고, 승인 신청시	성분 분석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	○
	인체 유해성	-	○
	환경 유해성	-	○
기업 제출 자료	효능	효과·효능 주장하는 경우	○
	위해성 평가	안전기준 미설정 제품은 업체가 유해성등 자료를 제출하고, 위해성평가는 기술원이 수행	과학원의 제출요청시 제출  ○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안전확인, 승인시 신청자료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표시기준」(환경부 고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살생물물질과 살생물제품 승인신청자료의 작성범위 및 작성방법 등에 관한 규정(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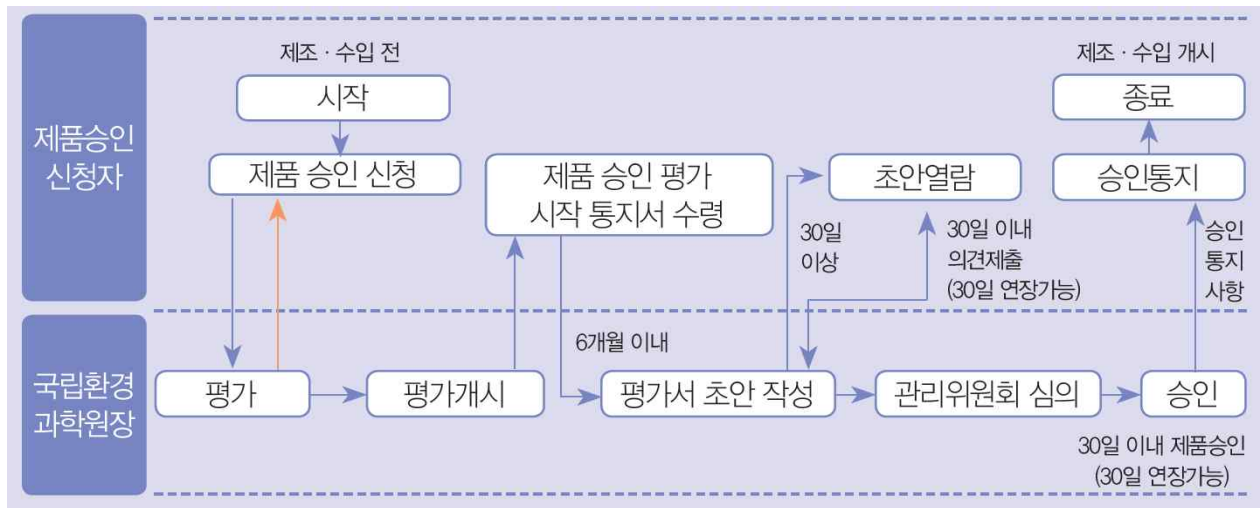
## 참고 6

##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절차 및 문의처

□ 살생물물질 승인(자료 수정·보완기간 제외, 평가에 1년 9개월 이상 소요 가능)



□ 살생물제품 승인(자료 수정·보완 기간을 제외, 평가에 1년 3개월 이상 소요 가능)



□ 문의처

- 살생물제품 승인: 국립환경과학원(032-560-7913)
- 안생품 신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62)
- 안생품 승인: 국립환경과학원(032-560-7914)
- 살생물제품 승인 지원: 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02-6050-1314~1316)

-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http://chemp.me.go.kr)) 살생물제 공지사항에서 1~4 목록 확인
  - 1. 검토평가 중인 '22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64종)
  - 2. 승인신청 후 반려·자진취하된 '22년 승인유예대상 물질(57종)
  - 3. 승인신청자료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한 '22년 승인유예대상 물질(76종)
  - 4. 기존살생물물질 지정해제 또는 일부 제품유형 지정해제 목록

# 참고 8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앞쪽)

신고번호		제 호
<b>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b>		
신고인	상호(명칭)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제품	제조·수입  [ ] 제조 [ ] 수입	품목
	제품명	용도
	제형	중량·용량·매수
	제조국명(수입의 경우)	제조회사명(수입의 경우)
	효과·효능(제품에 들어 있는 살생물물질에 의한 효과·효능 사용설명서에 기재하거나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b>기타 신고사항</b> · 본 신고제품은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은 승인받은 물질이어야 함. 또한 살생물물질을 승인받은 자(제조·수입자)의 제조원과 동일한 곳에서 물질을 공급받아 해당 살생물물질이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까지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아야 함. · 안전기준적합확인의 유효기간 내라도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내 살생물제품 승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법 제20조, 제35조, 제37조 및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 금지, 회수·폐기 조치 명령, 과징금, 벌칙 등 처분 대상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 환경 산업 기술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 참고 9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앞쪽)

승인번호 제 호	
<b>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통지서</b>	
승인받은 자	상호(명칭) <span style="float: right;">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span>
	성명(대표자) <span style="float: right;">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span>
	대표자 주소
	제조·보관시설 소재지 <span style="float: right;">(전화번호: ) (팩스번호: )</span>
제품명	품목
제형	용도
함유물질 및 그 분량	
효과·효능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중량·용량·매수	
<b>저장방법 및 유통기한</b> · 본 승인제품은 살생물제품에 해당하므로, 제품에 함유된 모든 살생물물질은 승인받은 물질이어야 함. 또한 살생물물질을 승인받은 자(제조·수입자)의 제조원과 동일한 곳에서 물질을 공급받아 해당 살생물물질이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제품유형별 승인유예기간까지 살생물제품으로 승인받아야 함. · 해당 제품의 유통기간 내라도 살생물제품 승인유예기간 내 살생물제품 승인이 완료되지 않으면 법제20조, 제35조, 제37조 및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판매·유통 금지, 회수·폐기 조치 명령, 과징금, 벌칙 등 처분 대상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9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승인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립환경과학원장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직인           </div>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